

의안번호	2211144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5.7.18.
추계번호	25D35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유통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4억 6,300만원씩 총 23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회의참석수당	38	38	38	38	38	190	38
서면실태조사	425	425	425	425	425	2,125	425
합계	463	463	463	463	463	2,315	463

주: 본 추계는 시·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서면실태조사 실시 방법이 변경되면 추가 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2(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함)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함)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분쟁조정협의회(이하“시·도 협의회”라 함)를 둘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시·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2항),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30조(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0조의2(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2	안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시·도지사가 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여비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 각 시·도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30조(서면실태조사)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도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과 서면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시·도분쟁조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조정 건수가 유사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사례를, 서면실태조사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각각 참고함
 - 시·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 9명, 연평균 회의횟수 0.8회
 - 유통거래 실태조사 비용: 7,500만원(서면 2,500만원, 대면 5,000만원)

[표 2] 시·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분쟁조정 실적: 2023~2024년

(단위: 명, 건)

구분	위원 수	분쟁조정 건수		
		2023	2024	소계
서울특별시	9	4	1	5
부산광역시	9	—	—	—
인천광역시	9	—	—	—
경기도	9	5	1	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시·도의 협조를 받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3] 유통거래 실태조사 예산: 2020~2024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사대상 업체	7,000	7,000	7,000	7,000	7,000
조사방식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대면조사	설문조사+대면조사
예산액	25	25	25	75	75

주: 조사대상 업체의 수와 실제 응답한 업체의 수에는 차이가 존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다만, 안 제29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도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는데, 인쇄비·국내여비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미미하여 각 시·도의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안 제20조)

- 회의참석수당은 전국 17개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수에 회의개최 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하며,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안 제20조의2¹⁾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익 대표, 대규모유통업자 대표, 납품업자 등 대표를 같은 수로 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명 모두 민간위원으로 가정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로 하며,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

1) 안 제20조의2(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4]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회의 참석 수당	시·도(A, 개)	17	17	17	17	17	—
	지급인원(B, 명)	9	9	9	9	9	—
	지급단가(C, 천원)	250	250	250	250	250	—
	회의일수(D, 일)	1	1	1	1	1	—
	소계(E=A×B×C×D, 백만원)	38	38	38	38	38	1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서면실태조사(안 제30조)

- 서면실태조사 비용은 전국 17개 시·도가 관할 지역 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의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5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사업에 유통분야 실태조사 비용으로 7,500만원(서면 2,500만원, 대면 5,000만원)이 편성됨
 - 각 시·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단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2,500만원과 같다고 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고 유지된다고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시·도가 관할 지역 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5] 시·도 서면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서면 실태 조사	시·도(A, 개)	17	17	17	17	17	—
	실태조사 단가(B)	25	25	25	25	25	—
	소계(C=A×B)	425	425	425	425	425	2,1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유통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4억 6,300만원씩 총 23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회의참석수당	38	38	38	38	38	190	38
서면실태조사	425	425	425	425	425	2,125	425
합계	463	463	463	463	463	2,315	463

주: 본 추계는 시·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서면실태조사 실시 방법이 변경되면 추가 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 서면실태조사 실시 대상과 방법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

[참고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2020~2025.6월말)

(단위 : 건, 일, %)

구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및 유형				처리기간
		건수	계 [A+B+C]	성립 [A]	불성립 [B]	종결 [C]	
2020년	소계	3,008	2,972	1,308	411	1,253	49
	공정	976	932	309	97	526	49
	가맹	514	499	176	71	252	45
	하도급	897	955	472	164	319	51
	유통	31	37	22	2	13	48
	약관	510	479	295	69	115	44
	대리점	80	70	34	8	28	72
2021년	소계	2,894	2,936	1,156	392	1,388	49
	공정	1,054	1,054	337	129	588	51
	가맹	490	483	165	62	256	43
	하도급	855	863	386	128	349	47
	유통	31	25	9	3	13	54
	약관	393	427	225	60	142	50
	대리점	71	84	34	10	40	78
2022년	소계	2,846	2,868	1,202	339	1,327	42
	공정	1,085	1,119	423	148	548	45
	가맹	489	513	230	54	229	41
	하도급	901	853	361	95	397	43
	유통	28	34	21	1	12	46
	약관	257	271	141	27	103	31
	대리점	86	78	26	14	38	48
2023년	소계	3,481	3,151	1,278	350	1,523	47
	공정	1,372	1,267	475	135	657	44
	가맹	605	575	263	62	250	44
	하도급	1,044	929	354	100	475	48
	유통	29	26	13	1	12	39
	약관	339	278	137	48	93	53
	대리점	92	76	36	4	36	78
2024년	소계	4,041	3,840	1,450	465	1,925	49
	공정	1,795	1,603	624	150	829	45
	가맹	584	587	246	96	245	45
	하도급	1,105	1,107	375	113	619	54
	유통	29	29	16	3	10	52
	약관	457	429	152	96	181	51
	대리점	71	85	37	7	41	76
2025년 6월말	소계	2,176	2,150	825	260	1,065	55
	공정	1,069	1,041	384	120	537	55
	가맹	322	280	116	44	120	52
	하도급	530	553	203	57	293	57
	유통	14	11	7	0	4	68
	약관	197	216	103	26	87	49
	대리점	44	49	12	13	24	87